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0. 27.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5년 10월 1일

나. 발 의 자: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2025년 10월 15일

라. 상정일자: 제26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2025. 10. 20.)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감사담당관)

가. 제안이유

-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획재정국 징수과 소관 '선정 대리인 관련 업무'를 감사담당관 납세자보호관 업무로 이관·신설하여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선정 대리인 운영에 관한 규정(제6조부터 제8조까지)을 이관 신설
 - 1) 선정 대리인 운영에 관한 규정 (안 제4조제5호 신설)
 - 2) 선정 대리인을 신청한 납세자의 소유 재산 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1조 신설)

- 3) 선정 대리인의 신청·통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2조 신설)
- 4) 선정 대리인의 의무·우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3조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강용철)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가 개정('24.12.31.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업무가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로 규정됨에 따라 종전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선정 대리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본 조례에 편입시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함.

○ 검토 결과

-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란 영세한 납세자가 불복 제도를 잘 모르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을 제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선정 대리인)이 불복 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임.
- 그동안 우리 구(區)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 조례」에 관련 규정을 두어 기획재정국 징수과에서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이를 감사담당관 납세자보호관에 이관하려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됨.
- 집행기관에서는 소관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해당 업무 및 관련 예산의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구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여겨짐.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617호
----------	-------

제출연월일: 2025. 10. .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획재정국 징수과 소관 ‘선정 대리인 관련 업무’를 감사담당관 납세자보호관 업무로 이관·신설하여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선정 대리인 운영에 관한 규정(제6조부터 제8조까지)을 이관 신설

- 1) 선정 대리인 운영에 관한 규정 (안 제4조제5호 신설)
- 2) 선정 대리인을 신청한 납세자의 소유 재산 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1조 신설)
- 3) 선정 대리인의 신청·통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2조 신설)
- 4) 선정 대리인의 의무·우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3조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77조,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 제62조의2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2025.8.28. ~ 9.17./20일간)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선정 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 영 제62조의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제32조(선정 대리인의 신청 · 통지 등) ①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 대리인”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 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 · 불복청구인

- 대리인 지정일자 · 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 · 관리하여야 한다.
- 제33조(선정 대리인의 의무 · 우대 등) ① 선정 대리인은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선정 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③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 · 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④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 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 제7조, 제8조를 삭제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법 제77조제2항 및 영 제51조의2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는 다 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u><신설></u> <u><신설></u> <u><신설></u>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 ----- ----- -----. 1. ~ 4. (현행과 같음) 5. <u>선정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u> 제31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제2항제2호 각 목의 소 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제32조(선정 대리인의 신청 · 통 지 등) ①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서울특 별시 영등포구 선정 대리인(이 하 “선정 대리인”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 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 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의 위촉한 사

<신 설>

람 중에서 선정 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의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불복청구인·대리인 지정일자·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3조(선정 대리인의 의무 · 우대 등) ① 선정 대리인은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 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 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